

위조지폐

이것만
확인하세요!

! 항상 2개 이상의 '위조방지장치'를 확인하세요



모든 지폐에는
숨은 그림과 은선이 있으며
오만원권, 만원권, 오천원권에는
홀로그램이 있습니다.

! 다량의 현금을 셀 때는
홀로그램이 있는 방향으로 넘기세요



앞면에 홀로그램이
있는지 확인합니다.

! 현금은 밝은 곳에서 주고 받으세요



가급적 밝은 곳에서 거래하고
어두운 곳에서는
휴대전화 빛 등으로
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합니다.

TIP 위조지폐 처벌 기준은?

화폐를 위조하면 사형,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,
위폐인 줄 알면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
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위조지폐로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세요.

화폐도안

화폐그림,
함부로 사용하면
안 돼요!

화폐도안은 「저작권법」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을
가진 한국은행이 정한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
이용기준 위반 시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
이하의 벌금형이나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화폐도안 이용 기준

▶ 화폐모조품 (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)

1. 교육, 연구, 보도, 재판의 경우에만 해당
2. 현용 은행권 크기의 50% 이하 또는 200% 이상
3. 주화는 금속을 제외한 기타 재료로 제조



금속제작

▶ 인쇄 삽화 (서적·신문·잡지·광고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)

1. 단면 인쇄만 가능



양면인쇄

2. 현용 은행권 크기의 75% 이하 또는 150% 이상
3. 도안 일부의 삽화 이용 시에도 동일

화폐도안 불법 도용 사례

- ▶ 화폐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한 경우
- ▶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여 배포한 경우
- ▶ 은행권을 상품권이나 특정물품의 할인티켓으로 만든 경우
- ▶ 화폐도안을 이용한 상품



TIP 화폐도안을 사용하고 싶다면?

「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」 이외의 방법으로
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
한국은행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- 화폐도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음란성, 폭력성, 사치성, 사행성 조장 광고나 복사기, 스캐너 등
화폐의 위·변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의 광고에는
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